

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가이드라인 을 소개합니다

환경부 시행 (20.12.1)

•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•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다회용기 사용 및 1회용품 사용 규제	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사용 가능			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상황에 맞게 결정